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10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57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 교육훈련성적, 국·과 장 및 읍면동장 추천” 을 “
읍면동장 추천”으로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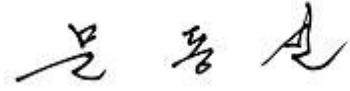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6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p> <p>① (생략)</p> <p>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동근무경력, 교육훈련성적, 국·과장 및 읍면동장 추천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p>	<p>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읍면동장 추천</u>----- ----- ----- -----.</p>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58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 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8조 및 제1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대장 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

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안제140조의 3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text{소득금액} \times \text{제한세율} = \text{산출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 (\text{소득세·법인세 세율} \times \text{지방소득세 세율})]} = \text{지방소득세}$$

- ⑤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79호부터 제79호의4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

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5절(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및 제10절(제169조부터 제17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제50호까지 및 제73호서식부터 제79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부터 제79호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군산시시세 부과징수규칙 서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49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중과 여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50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m²)

(별지 제75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

(별지 제76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 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

(별지 제77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8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9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9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 m²)

(별지 제79호의3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 민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 색모조 80g/ m²)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서식 목록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1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제5조제1항, 6조3항, 17조3항, 24조2항, 22조
2	2	징수(감액·결손) 결정액통보서	5조4항
3	3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수납부	6조4항, 21조
4	4	징수부	5조3항, 24조4항
5	5	신고납부 시세 FAX·우편 접수대장(홍서식)	10조3항
6	6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12조1항, 28조3항
7	7	○○연도 ○○기분 ○○세 송달불능부	12조2항, 15조, 28조3항
8	8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홍서식)	17조1항
9	9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소인불일치자료 처리대장	22조1항
10	10	시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23조
11	11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용 통보서	24조1항
12	12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홍서식)	25조2항
13	13	연대납세의무자 과오납금 지급 동의서	26조3항
14	14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	27조3항
15	15	과오납금 지급대상자 통보서	28조1항
16	16	이월체납액 정리부(홍서식)	35조1항
17	17	징수유예 정리부	36조1항
18	18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40조1항
19	19	납세담보에 의한 시세 충당통지서	29조7항, 40조2항
20	20	납세담보관리대장(홍서식)	43조1항
21	21	체납액 정리부(홍서식)	4조2항
22	22	지방세 체납 정리표	45조
23	23	징수축(수)탁 정리부	46조
24	24	재산 압류 대장	55조1항
25	25	압류 재산 보관증	56조1항, 62조1항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26	26(갑)	천연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7	26(을)	법정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8	27	등기부(등록부) 열람대장	56조3항, 63조1항
29	2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69조1항, 80조2항
30	29	압류자동차(기계장비) 인수증명서	70조3항
31	30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조서	84조, 87조1항
32	31	공매공고	85조3항
33	32	평가감정서	87조3항
34	33	경매조서	91조2항
35	34	입찰규정(표지)	92조
36	35	경매규정(표)	92조
37	36	납입서	94조
38	37	광업권 이전등록촉탁서	96조2항
39	3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제97조
40	39	영수증	102조
41	40	공탁서(금전)	103조2항
42	41	공탁통지서(금전공탁)	103조2항
43	42(갑)	결손처분표	122조
44	42(을)	결손처분표	122조
45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29조7항
46	4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29조8항
47	45	심의서	129조12항
48	46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140조1항
49	47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홍서식)	140조1항
50	48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2 1항
51	49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홍서식)	140조의2 2항
52	50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2 3항, 140조의5 3항
53	51	재산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	142조1항
54	52	공용공익사업용재산 폐지신고서	142조1항
55	53	건축물조사표	143조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56	54	선박조사표	143조
57	55	항공기 조사표	143조
58	56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부(홍서식)	144조1항
59	57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홍서식)	145조1항
60	58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고서	145조2항
61	59	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 처리부(홍서식)	145조3항,146조 1항·3항
62	60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신고서	146조2항
63	61	자동차 비과세.감면 처리부(홍서식)	148조
64	62	영치증	150조
65	63	주행세 신고납부 처리부	152조
66	67	담배소비세액 납입대장	161조
67	68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	162조2항
68	7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홍서식)	140조의4 1항
69	7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0	7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1	7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2	77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홍서식)	140조의5 1항
73	7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홍서식)	140조의6 5항
74	7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5	79의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6	79의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7	79의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홍서식)	140조의7 1항
78	8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127조의2 2항
79	81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27조의2 2항
80	82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127조의2 2항
81	83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127조의2 3항

신·구조문대비표

연행	개정안
<p>제137조(균등할 주민세) ①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고, 동일한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는 그 자의 세대주가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p> <p>③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라도 연간금액으로 환산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④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p>	<p>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p> <p>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p> <p>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p>

연행	개정안
<p>제138조(특별징수) ①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와 동시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p> <p>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9조(보통징수) ①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47호 서식 내지 제49호 서식의 소득할주민세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②주민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p>	<p><삭 제></p>
<p>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주민세를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p> <p>②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사유 및 부과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p>	<p>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연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 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40조의3(대장 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연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의2 지방소득세</p> <p>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연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연행	개정안
<p>제5절 농업소득세</p> <p>제153조(대장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89호 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p> <p>제154조(소득금액)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제83호 서식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p> <p>제155조(수입금액 열람공고) 수입금액 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 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6조(농업소득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p> <p>제157조(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①세무 공무원은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다른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 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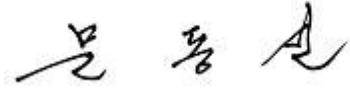
연행	개정안
<p>제158조(재해지 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9조(농업소득실태조사 등)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하여 필지별, 작물명, 식재면적, 작황, 수확량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실태조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0절 사업소세</p>	<p><삭 제></p>
<p>제169조(신고납부)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제74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소세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 서식 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신고납부 기한내에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삭 제></p>

연행	개정안
<p>제170조(보통징수) ①과세자료를 통보 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 또는 제77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②사업소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 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p> <p>제171조(대장정리) ①시행규칙 제100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 <p>②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연행	개정안
<p>제17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부과부서는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73조(비과세 및 감면) ①사업소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제79호 서식에 의거 사업소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p> <p>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p> <p>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p>	<p><삭 제></p>

군산시 인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6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264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1년”을 “1년 10개월”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적 30%(근무평정성적 최근2회 평정점으로 환산)
2. 읍면동 근무경력 40%(48개월만점 기준으로 환산, 단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근무기간	점 수	근무기간	점 수	비 고
48개월이상	40점	31~36개월	34점	
43~47개월	38점	25~30개월	32점	
37~42개월	36점	24개월까지	30점	

3.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되 6급은 규정발령 1년 경과 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명부 작성대상) ①6급이하 행정 사회복지직으로 당해 직급에서 읍면동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12조(명부 작성대상) ①----- ----- -----		<u>1년 10개월</u> -----.																					
16조(명부 작성방법) ①(생 략) 1. 근무성적 35% (근무평정성적 최근 2회 평정점으로 환산)		16조(명부 작성방법) ①(현행과 같음) 1.-----		<u>30%</u> (----- -----)																					
2. 읍면동 근무경력 20%(24개월만점 기 준으로 환산하되 1월마다 0.5점씩 차등 감점)		2.-----		<u>40%(48개월만점 기준으로 환산 단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u>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기간</th> <th>점 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48개월이상</td> <td>40점</td> <td></td> </tr> <tr> <td>43~47개월</td> <td>38점</td> <td></td> </tr> <tr> <td>37~42개월</td> <td>36점</td> <td></td> </tr> <tr> <td>31~36개월</td> <td>34점</td> <td></td> </tr> <tr> <td>25~30개월</td> <td>32점</td> <td></td> </tr> <tr> <td>24개월까지</td> <td>30점</td> <td></td> </tr> </tbody> </table>	근무기간	점 수	비 고	48개월이상	40점		43~47개월	38점		37~42개월	36점		31~36개월	34점		25~30개월	32점		24개월까지	30점	
근무기간	점 수	비 고																							
48개월이상	40점																								
43~47개월	38점																								
37~42개월	36점																								
31~36개월	34점																								
25~30개월	32점																								
24개월까지	30점																								
3. 국·과장 추천점 15%(단, 사회복지직은 정원을 두고 있는 해당 국·과장이 추천)		3. <삭 제>																							

군산시 고시 제2010 - 6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 06. 01.

군 산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10-0035호
2. 허가연월일 : 2010. 5. 31
3. 점·사용목적 : 선유도 선착장 부잔교(함선1기)설치
4. 점·사용 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39번지 지선
5. 점·사용 면적 : 420m²
6. 점·사용 기간 : 2010. 05 . 31. ~ 2011. 05. 30.(1년간)
7. 점·사용허가를 받은자 : (주)선유유람선
8. 기타사항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10 - 67호

군산시 회현면 대정1지구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24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지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 도근점	51476	267890.76	176468.28	회현면 대정리 79	2010.4.12	토지정보과
“	51477	267586.56	176473.10	회현면 대정리 603-8	“	“
“	51478	267726.49	176471.22	회현면 대정리 603-4	“	“
“	51479	267401.73	176481.43	회현면 대정리 765-3	“	“
“	51480	267185.75	176477.48	회현면 대정리 603-4	“	“
“	51481	266997.23	176474.06	회현면 월연리 655	“	“
“	51482	266686.74	176486.79	회현면 월연리 621-20	“	“
“	51483	266729.88	176724.77	회현면 금광리 1328	“	“
“	51484	267000.30	176693.17	회현면 금광리 1300-10	“	“
“	51485	267125.87	176697.01	회현면 금광리 1301-20	“	“
	51486	267005.97	176898.66	회현면 금광리 1325		
	51487	267128.85	176912.71	회현면 금광리 1303-8		
	51488	267431.30	176910.00	회현면 금광리 1303-13		
	51489	267404.40	176679.33	회현면 대정리 764-11		

군산시 고시 제2010 - 68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기결정(군산고 2009-94호)된 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정정고시 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일

군 산 시 장

I.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조서(추가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군산시 전체	456,524,971	-	456,524,971	100.0		
도시지역	207,448,822	-	207,448,822	45.4		
주거 지역	소계	18,597,892	증 339	18,598,231	4.1	
	제1종일반주거지역	4,735,040	증 339	4,735,379	1.0	
녹지 지역	소계	81,210,462	감 339	81,210,123	17.8	
	생산녹지지역	38,704,899	감 339	38,704,560	8.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1. 구 분	2. 위 치	3. 용 도 지 역		4. 면 적 5. (m ²)	6. 용적율 7. (%)	8. 변 경 사 유
		9. 기 정	10. 변 경			
1	소로2-307 선형변경 관련(간호대학변)	생산녹지	제1종 일반주거	339	200%이하	• 소로2-307의 경미한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2. 용도지구 결정(변경)

1)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9	개정동지구	일반미관지구	개정동 (개정병원주변)	441,270	-	-	전북고5 (2003.1.)	
변경	19	개정동지구	일반미관지구	개정동 (개정병원주변)	441,506	-	-	전북고5 (2003.1.)	지구 확대
기정	20	대1-2호선변	중심지 미관지구	나운동, 산북동 상업지역 대1-2호선변	23,100	1,150	20	전북고111 (‘95.6.29)	
변경	22	대1-2호선변	중심지 미관지구	나운동, 산북동 상업지역 대1-2호선변	23,100	1,150	20	전북고111 (‘95.6.29)	번호변경

■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9	개정동지구 (일반미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개정병원주변 면적 : 441,270㎡ → 441,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2-307호선의 경미한 선형변경 (군산고 2009-94)에 의한 지구 경계 조정
변경	22	대1-2호선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0 →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관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면 표시번호 변경

2)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계획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서만자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야면 지경리 918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5,140	전북고6 (2003.1.)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43	서만자 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야면 지경리 918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5,140	전북고6 (2003.1.)	번호변경
기정	2	석화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야면 산월리 142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0,500	전북고6 (2003.1.)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44	석화지구	자연취락지구	대야면 산월리 142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0,500	전북고6 (2003.1.)	번호변경
기정	3	신발산 지구	자연취락지구	개정면 발산리 150-1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3,070	전북고6 (2003.1.)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45	신발산 지구	자연취락지구	개정면 발산리 150-1번지 일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3,070	전북고6 (2003.1.)	번호변경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43	서만자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1(대야) →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44	석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대야) → 44 	
변경	45	신발산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대야) → 45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2,250	내초도지구계	광로 2-4시점	일반도로	7,8호광장	건고37 (76.3.27)	군장산단
변경	광로	2	6	50	주간선	2,250	내초도지구계	광로 2-4시점	일반도로	7,8호광장	건고37 (76.3.27)	번호변경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535	광로 2-2	내초도지구계	일반도로	19호공원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광로	2	7	50	주간선	535	광로 2-2	내초도지구계	일반도로	19호공원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2,763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대로1-4시점	일반도로	국가공단	건고742 (91.12.5)	군장산단
변경	대로	1	17	35	주간선	2,763	대로1-15	대로1-22	일반도로	국가공단	건고742 (91.12.5)	번호변경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903	대로1-3종점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1	20	35	주간선	903	대로2-16	대로1-16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	2,367	광로3-1	대로1-2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1	21	35	주간선	2,367	광로3-1	대로2-16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1,268	대로1-1종점	공장용지	일반도로	국가공단	건고742 (91.12.5)	군장산단
변경	대로	1	22	35	주간선	1,268	대로1-17	비응도동 4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742 (91.12.5)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162	대로1-1	중로1-41	일반도로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13	30	보조간선	162	대로1-17	대로2-17	일반도로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11	30	보조간선	620	대로 1-2	대로 3-23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15	30	보조간선	620	대로2-16	대로3-23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922	광로2-2	대로1-2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16	30	보조간선	922	광로2-6	대로2-15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11. 구분	12. 규모				13. 기능	14. 연장 15. (m)	16. 기 점	17. 종 점	18. 사용 19. 형태	20. 주 요 21. 경 과 지	22. 최초 23. 결 정 일	24. 비 고
	25. 급	26. 별	27. 호	28. 원 29. (m)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	631	대로1-3	대로3-4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18	30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1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1,023	광로2-4	대로1-3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023	광로2-7	대로1-21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	1,024	광로3-1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20	30	보조간선	1,024	광로3-1	소로2-494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2	8	30	보조간선	656	대로3-1	대로 2-9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2	21	30	보조간선	656	대로3-18	대로2-20	일반도로	군장산단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954	광로2-4	대로1-3	일반도로		건고742 (91.12.5)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16	25	보조간선	954	광로2-7	대로1-21	일반도로		건고742 (91.12.5)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773	대로2-8	중로1-30	일반도로		건고742 (91.12.5)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18	25	보조간선	773	대로2-21	중로1-56	일반도로		건고742 (91.12.5)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764	광로3-1	대로2-8	일반도로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20	25	보조간선	764	광로3-1	대로2-21	일반도로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1,831	광로3-1	대로3-23	일반도로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21	25	보조간선	1,831	광로3-1	대로3-23	일반도로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	631	대로1-3	대로3-23	일반도로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22	25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3	일반도로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9	25	보조간선	1,051	대로1-1	대로3-4	일반도로		건고80 (94.3.18)	군장산단
변경	대로	3	26	25	보조간선	1,051	대로1-17	대로3-21	일반도로		건고80 (94.3.18)	번호변경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180	대로3-3 산월리531답	종로1-2 산월리534-1답	일반도로		건고681 (‘69.12.1)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27	25	주간선	180	대로3-29	종로1-83	일반도로		건고681 (‘69.12.1)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3,244	산월리 구역계 산월리352-2답	발산리 구역계 발산리463-7도	일반도로		건고681 (‘69.12.1)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28	25	주간선	3,244	대로2-23	30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681 (‘69.12.1)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	1,805	대로3-2 산월리467-2대	보덕리 구역계 보덕리311-1답	일반도로		전북고133 (‘77.7.20)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29	25	주간선	1,805	대로3-28	소로2-952	일반도로		전북고133 (‘77.7.20)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295	지경리구역계	대로3-2 산월리360-1답	일반도로		전북고133 (‘77.7.20)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30	25	주간선	295	소로2-973	대로3-28	일반도로		전북고133 (‘77.7.20)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1	25	간선도로	1,378	축산리 533구	읍내리 678-3도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임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31	25	간선도로	1,378	소로2-953	소로1-414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2	25	간선도로	267	대3-1 읍내리 222-6대	읍내리 189-2도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임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32	25	간선도로	267	대로3-31	소로2-952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번호변경
기정	대로	3	3	25	간선도로	423	대3-1 읍내리 506-8도	읍내리 8-2도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임피도시 계획구역
변경	대로	3	33	25	간선도로	423	대로3-31	소로1-415	일반도로		전북고325 (‘77.12.30)	번호변경
기정	종로	1	4	20	보행자 전용도로	25	소로1-19	광장1	특수도로	-	전북고321 (06.11.24)	비응항
변경	종로	1	78	20	보행자 전용도로	25	소로1-335	광장21	특수도로	-	전북고321 (06.11.24)	번호변경
기정	종로	2	72	15.5	국지도로	177	대로 2-3	대로3-5	일반도로	-	군산고4 (09.1.14)	대명현대 아파트
변경	종로	2	132	15.5	국지도로	177	대로 2-3	대로3-5	일반도로	-	군산고4 (09.1.14)	번호변경
기정	종로	2	9	15	국지도로	10	대로3-1	공장용지 1594-2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군산산단
변경	종로	2	133	15	국지도로	10	대로3-14	공장용지 1594-2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번호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10	대로3-1	공장용지 1594-3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군산산단
변경	중로	2	134	15	국지도로	10	대로3-14	공장용지 1594-3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번호변경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1	옥산리1141-6 답	옥산리60-4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중로	3	55	12	국지도로	41	옥산리1141-5 답	옥산리60-4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중로	3	1	10	국지도로	10	대로3-1	공장용지 1594-3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군산산단
변경	중로	3	60	10	국지도로	10	대로3-14	공장용지 1594-1	일반도로	-	익산국토관 리청고158 (2005.8.)	번호변경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362	옥산리60-3도	옥산리23-5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1	401	10	집산도로	289	옥산리 대3-35	옥산리23-5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노선단축 번호변경
기정	소로	2	863	8	국지도로	275	산월리 대3-29	산월리 중1-83	일반도로		건고 2 (‘72.2.16)	
변경	소로	2	863	9	국지도로	275	산월리 대3-29	산월리 중1-83	일반도로		건고 2 (‘72.2.16)	구적오차 정정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249	중3-1	소2-2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2	927	8	집산도로	249	대3-35	소2-928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124	옥산리12-5전	옥산리17-2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2	928	8	집산도로	124	옥산리12-5전 소2-964	옥산리17-2전 소1-409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2	794	8	국지도로	160	구암동327-1 소1-110	구암동371 소3-278	일반도로		전북고15 (78.5.22)	
변경	소로	2	945	8	국지도로	160	구암동327-1 소1-110	구암동371 소3-278	일반도로		전북고15 (78.5.22)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69	6	국지도로	98	월명동 중1-1	월명동 26-10 소2-6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69	6	국지도로	98	월명동 중1-1	월명동 26-10 소2-6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319	월명동 383 소2-63	월명동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392 (‘80.12.4)	
변경	소로	3	73	6	국지도로	174	월명동 383 소2-63	월명동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392 (‘80.12.4)	구적오차 정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24	6	국지도로	480	산월리 중1-83	산월리 중2-117	일반도로		건고2 (‘72.2.16)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소로	3	524	6	국지도로	323	산월리 중1-83	대야초등학교	일반도로		건고2 (‘72.2.16)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1	6	집산도로	328	중3-1	옥산리129-1답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1	5	집산도로	318	대3-35	옥산리129-1답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노선단축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2	6	집산도로	392	소1-1	소3-1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2	6	집산도로	396	소1-401	소3-571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노선연장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3	6	집산도로	104	소3-2	옥산리238-1답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3	6	집산도로	104	소3-572	옥산리238-1답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4	6	집산도로	89	소3-1	소3-2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4	6	집산도로	89	소3-571	소3-572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5	6	집산도로	303	중3-1	소3-3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5	6	집산도로	288	대3-35	소3-573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노선단축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6	6	집산도로	97	소3-1	소3-5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6	6	집산도로	97	소3-571	소3-575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7	6	집산도로	179	소1-1	소3-5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7	6	집산도로	179	소1-401	소3-575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8	6	집산도로	34	소3-2	소3-7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8	6	집산도로	34	소3-572	소3-577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	6	집산도로	14	옥산리424-2구	중3-1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79	6	집산도로	14	옥산리424-2구	대3-35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0	6	집산도로	100	소1-1	소2-1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80	6	집산도로	95	소1-401	소2-927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노선단축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1	6	집산도로	183	소2-1	옥산리2-3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81	6	집산도로	183	소2-927	소2-964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2	6	집산도로	74	소2-1	소3-14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82	6	집산도로	74	소2-927	소3-584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3	6	집산도로	89	소2-1	소3-14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83	6	집산도로	89	소2-927	소3-584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기정	소로	3	14	6	집산도로	118	소3-11	옥산리12-16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	3	584	6	집산도로	118	소3-581	옥산리12-16전	일반도로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 도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변경	광로2-2	광로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 번호 = 2-2 →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장 산업단지
변경	광로2-3	광로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 번호 = 2-3 → 2-7 		
변경	대로1-1	대로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1-1 → 1-17 		
변경	대로1-2	대로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1-2 → 1-20 		
변경	대로1-3	대로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1-3 → 1-21 		
변경	대로1-4	대로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1-4 → 1-22 		
변경	대로2-5	대로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5 → 2-13 		
변경	대로2-11	대로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11 → 2-15 		
변경	대로2-4	대로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4 → 2-16 		
변경	대로2-6	대로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6 → 2-18 		
변경	대로2-7	대로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7 → 2-19 		
변경	대로2-9	대로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9 → 2-20 		
변경	대로2-8	대로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8 → 2-21 		
변경	대로3-6	대로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6 → 3-16 		
변경	대로3-1	대로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1 → 3-18 		
변경	대로3-2	대로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2 → 3-20 		
변경	대로3-4	대로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4 → 3-21 		
변경	대로3-5	대로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2 → 3-22 		
변경	대로3-9	대로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9 → 3-26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변경	대로3-1	대로3-27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 → 3-27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계획구역
변경	대로3-2	대로3-28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2 → 3-28		
변경	대로3-3	대로3-29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3 → 3-29		
변경	대로3-4	대로3-30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4 → 3-30		
변경	대로3-1	대로3-31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 → 3-31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임피도시계획구역
변경	대로3-2	대로3-32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2 → 3-32		
변경	대로3-3	대로3-33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3 → 3-33		
변경	중로1-4	중로1-78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1-4 → 1-78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비응향
변경	중로2-72	중로2-132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72 → 2-132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명현대아파트
변경	중로2-9	중로2-133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9 → 2-133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산국가산업단지
변경	중로2-10	중로2-134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10 → 2-134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산국가산업단지
변경	중로3-2	중로3-55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2 → 3-55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옥산취락지구
변경	중로3-1	중로3-60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 → 3-60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산국가산업단지
변경	소로1-1	소로1-401	• 노선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L=362m → 289m • 시설번호 : 1-1 → 1-401	• 중로3-1 확폭에 의한 선형 변경 및 노선 단축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옥산취락지구
변경	소로2-863	소로2-863	• 구적오차(폭원) 정정 - B=8m → 9m	• 노선의 폭원 오류로 인한 정정	대야도시계획구역
변경	소로2-1	소로2-927	• 시점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중로3-1 → 대로3-35 • 시설번호 : 2-1 → 2-927	• 중로3-1이 대로3-35로 확폭됨에 따른 기점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옥산취락지구
변경	소로2-2	소로2-928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2 → 2-926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2-794	소로2-945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794 → 2-945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소로3-69	소로3-69	• 가각변경	• 소로2-63변경에 따른 가각변경	군산도시 계획구역
변경	소로3-73	소로3-73	• 구적오차정정 - L=319m→174m	• 구적오차에 따른 정정	
변경	소로3-524	소로3-524	• 노선 단축 및 종점변경 - L=480m → 323m - 기점 : 종로1-83 → 대야초교	• 대야초교 경계 일부 조정으로 변경된 초등학교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일부 제척함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소로3-1	소로3-571	• 노선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L = 328m→318m • 시설번호 : 3-1 → 3-571	• 종로 3-1의 확폭에 따른 노선 단축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옥산 취락지구
변경	소로3-2	소로3-572	• 노선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L=392m→396m • 시설번호 : 3-2 → 3-572	• 소로1-1 선형변경에 의한 노선 연장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3	소로3-573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3 → 3-573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4	소로3-574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4 → 3-574		
변경	소로3-5	소로3-575	• 노선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L=303m→288m • 시설번호 : 3-5 → 3-575	• 종로 3-1의 확폭에 따른 노선 단축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6	소로3-576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3-6→3-576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7	소로3-577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7 → 3-577		
변경	소로3-8	소로3-578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8 → 3-578		
변경	소로3-9	소로3-579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9 → 3-579		
변경	소로3-10	소로3-580	• 노선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 L= 100m → 95m • 시설번호 : 3-10 → 3-580	• 소로1-1 선형변경에 의한 노선 축소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11	소로3-581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1 → 3-581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변경	소로3-12	소로3-582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2 → 3-582		
변경	소로3-13	소로3-583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 → 3-583		
변경	소로3-14	소로3-584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14 → 3-584		

2) 주차장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6	주차장	해망동 1000-9번지	4,919	감) 408	4,511	2004.12.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36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해망동 1000-9번지 • 면적 : 4,919m² → 4,51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장대교(국도4호선 미개설구간 신설) 건설 공사에 따른 경계변경

3)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	군산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내초동 187-6 일원		증) 56,912	56,91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3	군산공영차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내초동 187-6 일원 • 면적 : 56,91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4) 항만시설 결정(변경) 조서

30. 구 분	31. 표 시 번호	33. 시 설 명	34. 시 설 의 세 분	36. 위 치	37. 면적 또는 연장(m ² ,m)			38. 최초 39. 결정일	40. 비고
					41. 기정	42. 변경	43. 변경후		
변경	3	비응항	1종어항	비응도 전면해상	86,976	-	86,976	전북고321 (06.11.24)	번호변경

■ 항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3	비응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1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5) 철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장항선	일반철도	개정면통사리 (대야도시계획구역계)	대야면 지경리 2018철		740	16,180	전북고444 (‘75.2.6)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10	장항선	일반철도	개정면통사리 (대야도시계획구역계)	대야면 지경리 2018철		740	16,180	전북고444 (‘75.2.6)	번호변경
기정	2	대야선	일반철도	대야면지경리 2018철	대야면 산월리 862-2철		913.34	41,643	전북고333 (‘00.10.17)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11	대야선	일반철도	대야면지경리 2018철	대야면 산월리 862-2철		913.34	41,643	전북고333 (‘00.10.17)	번호변경
기정	1	철도	철도	임피면 술산리 226-172철	임피면 술산리 226-172철		512	4,409	전북고15 (83.1.29)	술산 취락지구
변경	12	철도	철도	임피면 술산리 226-172철	임피면 술산리 226-172철		512	4,409	전북고15 (83.1.29)	번호변경

■ 철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변경	10	장항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1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11	대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2 → 11 		
변경	12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술산 취락지구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2	광장	근린광장	비응도동 46-8일원	1,266	-	1,266	전북고321 (06.11.24)	비응항 번호변경
변경	23	광장	근린광장	비등도동 61-4일원	1,186	-	1,186	전북고321 (06.11.24)	
변경	26	광장	교통광장	비등도동 90일원	2,397	-	2,397	전북고321 (06.11.24)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 용	변경 사유	비 고
변경	22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2 →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비응항
변경	23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3 → 23 		
변경	26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표시번호 변경 시설번호 : 6 → 26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5	비응도	완충녹지	비응도도 38일원	48,994	-	48,994	-	군장산단 번호변경
변경	76	오식도	완충녹지	오식도동 504-1일원	8,379	-	8,379	-	
변경	77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주변	10,388	-	10,388	03.8.18	
변경	78	완충녹지	완충녹지	나운동 1521-5일원	1,625	-	1,625	전북고296 (99.6.9)	군산도시 계획구역 번호변경
변경	79	완충녹지	완충녹지	나운동 1524일원	1,187	-	1,187	전북고296 (99.6.9)	
변경	80	장항선 철도변	완충녹지	산월리 63답 ~ 통사리 463-17전	51,760	-	51,760	전북고133 (‘77.7.20)	대야도시 계획구역 번호변경
변경	81	준공업지역 시설녹지	완충녹지	지경리 901-4전 ~ 지경리61-6임	2,700	-	2,700	전북고133 (‘77.7.2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변경	75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8 → 75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장국가 산업단지
변경	76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9 → 76		
변경	77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10 → 77		
변경	78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54 → 78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산도시 계획구역
변경	79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55 → 79		
변경	80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1 → 80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81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2 → 81		

3)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서악공원	자연공원	통사리,지경리 산75-1206임 일원	346,300		346,300	건고681 (69.12.1)	대야도시 계획구역 번호변경
변경	4	만자공원	자연공원	통사리,지경리 산33,산45임 일원	148,000	-	148,000	건고681 (69.12.1)	
변경	12	오식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 503일원	494,636	-	494,636	건고37 (76.3.27)	군장산단 번호변경
변경	13	내초공원	근린공원	내초동 231일원	143,816	-	143,816	건고742 (91.12.5)	
변경	29	제29공원	근린공원	수송동 798-1일원	24,066	-	24,066	전북고296 (99.6.9)	수송택지 번호변경
변경	30	대야공원	근린공원	지경리,산월리 산2,산231 일원	21,000	-	21,000	전북고 133 (‘77.7.20)	대야도시 계획구역 번호변경
변경	31	동오공원	근린공원	산월리463-6 일원	13,000	-	13,000	전북고 133 (‘77.7.20)	
변경	32	장산공원	근린공원	통사리 산134임 일원	28,000	-	28,000	‘69.2	
변경	33	임피공원	근린공원	임피면 읍내리 축산리 일원	80,000	-	80,000	전북고 478 (‘75.5.13)	임피도시 계획구역 번호변경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3	서약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1 → 3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4	만자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 → 4		
변경	12	오식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4 → 12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군장 산업단지
변경	13	내초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6 → 13		
변경	29	제29호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27 → 29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수송택지 개발지구
변경	30	대야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3 → 30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 계획구역
변경	31	동오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4 → 31		
변경	32	장산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5 → 32		
변경	33	임피공원	• 도면표시번호 변경 • 시설번호 : 1 → 33	•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면표시번호 변경	대야도시 계획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1	옥산초교	초등학교	옥산면 옥산리 30학	20,913	감) 514	20,399	전북고15 (83.1.29)	옥산취락 번호변경 경계조정
변경	75	대야초교	초등학교	대야면 산월리 448일원	28,105	증) 554	28,659	-	경계조정
변경	7	호원대학교	대학교	임피면 월하리 727 일원	294,819	-	294,819	전북고41 (99.)	번호부여

■ 학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51	옥산초교	• 구역경계 및 시설번호 변경 • 시설번호 : 미부여 → 51 • 면적 : 20,913m ² → 20,399m ²	• 소로1-1의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옥산취락구 개발계획에서 결정되었던 학교시설에 대한 번호 부여
변경	75	대야초교	• 구역경계 변경 • 면적 : 28,105m ² → 28,659m ²	• 학교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경계 조정
변경	7	호원대학교	• 구역경계 및 시설번호 변경 • 시설번호 : 미부여 → 7 • 면적 : 249,819m ²	• 국토이용관리법상 기결정된 학교시설에 대하여 금회 번호 부여

II. 기결정 사항에 대한 정정고시

○ 군산고 제2009 -94호로 고시된 사항들 중 지구 4개소, 시설 13개소에 대한 착오로 인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함

구분	당초 고시된 사항					정정 고고시하고자 하는 사항																	
자연 취락 지구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신설	36	선연지구	자연취락지구	옥서면 선연리 1562-1번지 일원	11,866	신설	36	선연지구	자연취락지구	옥서면 선연리 1562-1번지 일원	12,442											
	신설	37	옥곶리지구	자연취락지구	나포면 옥곶리 452번지 일원	82,083	신설	37	옥곶리지구	자연취락지구	나포면 옥곶리 452번지 일원	79,813											
	신설	39	회현 문화마을	자연취락지구	회현면 원우리 557-1번지 일원	52,997	신설	39	회현 문화마을	자연취락지구	회현면 원우리 557-1번지 일원	52,992											
<p>■ 정정사유 : 실제 문화마을로 조성 완료된 부지의 경계를 고려하여 지구 경계 및 면적조정</p>																							
개발 진흥 지구 및 자연 취락 지구	○ 개발진흥지구 폐지					○ 개발진흥지구 존치																	
	44. 구 분	45. 표 시 번호 46. 번 호	47. 지구명	48. 지구의 세분 49. 세분	50. 위치	51. 면 적 (m ²)	52. 구 분	53. 표 시 번호 54. 번 호	55. 지구명	56. 지구의 세분 57. 세분	58. 위치	59. 면 적 (m ²)											
	폐지	25	술산 2	주거	임피면 월하리 902	-	기정	25	술산 2	주거	임피면 월하리 902	148,691											
<p>○ 자연취락지구 신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표시 번호</th> <th>지구명</th> <th>지구의 세분</th> <th>위치</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38</td> <td>술산2지구</td> <td>자연취락지구</td> <td>임피면 월하리 902번지 일원</td> <td>148,691</td> </tr> </tbody> </table>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신설	38	술산2지구	자연취락지구	임피면 월하리 902번지 일원	148,691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신설	38	술산2지구	자연취락지구	임피면 월하리 902번지 일원	148,691																		
<p>○ 자연취락지구 미결정</p>																							
<p>■ 정정사유 : 술산2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개발진흥지구 폐지 불가</p>																							

구분	당초 고시된 사항								정정 고고시하고자 하는 사항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미결정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963	8	보조간선	519	회현면 월연리 771도	소로2-959 회현면 월연리 762도	일반도로	

■ 정정사유 : 도로구역(지방도)로 결정·고시된 노선으로 시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미결정 (지방도 744호선으로 고시 예정임 - 전북도 고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5	주차장	임피면 보석리 387 일원	-	증) 24,145	24,145	신설	65	주차장	임피면 보석리 387 일원	-	증) 21,826	21,826

■ 정정사유 : 결정한 일부 주차장부지에 재난관리과의 하천정비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하천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척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4	옥산공원	어린이 공원	옥산리6-5번지 일원	2,921	-	2,921	변경	84	옥산공원	어린이 공원	옥산리6-5번지 일원	2,921	-	2,921

■ 정정사유 : 시설번호를 84로 변경하여 고시 완료하였으나, 도면의 tc가 누락되어 정정고시(재고시)하고자 함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농업기술 센터	공공청사	개정면 운회리 633-8일원	-	증) 44,691	44,691	신설	16	농업기술 센터	공공청사	개정면 운회리 633-8일원	-	증) 30,166	30,166

■ 정정사유 : 일부지역의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어려워 시설 축소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반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5	연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연도리 10 일원	-	증) 4,278	4,278	미결정							
신설	67	방축도 분교	초등학교	옥도면 말도리 산130-1 일원	-	증) 2,295	2,295								
신설	68	명도분교	초등학교	옥도면 말도리 산115-33 일원	-	증) 1,726	1,726								

■ 정정사유 : 관련실과(군산시 교육청)의 협의 결과 계획이 없는 시설로 미결정함

구분	당초 고시된 사항							정정 고고시하고자 하는 사항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신설	44	서초교	초등학교	금동 20-3 일원	-	증) 7,424	7,424	신설	44	서초교	초등학교	금동 20-3 일원	-	증) 7,312	7,312
	신설	46	상평초교	초등학교	옥구읍 상평리 501 일원	-	증) 12,014	12,014	신설	46	상평초교	초등학교	옥구읍 상평리 501 일원	-	증) 12,320	12,320
	신설	66	야미도 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야미도리 18 일원	-	증) 2,821	2,821	신설	66	야미도 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야미도리 18 일원	-	증) 3,741	3,741
	신설	69	신시도 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신시도리 66 일원	-	감) 6,396	6,396	신설	69	신시도 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신시도리 66 일원	-	감) 6,319	6,319
	신설	73	어청도초 교	초등학교	옥도면 어청도리 86 일원	-	감) 8,119	8,119	신설	73	어청도 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어청도리 86 일원	-	감) 8,609	8,609

■ 정정사유 : 각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경계 조정, 관련실과(군산시 교육청) 협의 결과 반영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군산시 공설묘지	임피면 미원리 67-2 일원	-	증) 76,326	76,326	신설	1	봉황공원묘지	임피면 미원리 67-2 일원	-	증) 76,326	76,326

■ 정정사유 : 시설명칭 오류로 인한 조정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봉황공원묘지	임피면 보석리 산22 일원		증) 100,633	100,633	신설	2	군산시립묘지	임피면 보석리 산22 일원	-	증) 98,684	98,684

■ 정정사유 1 : 시설명칭 오류로 인한 조정

■ 정정사유 2 : 일부지역의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어려워 시설 축소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반영)

Ⅲ.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도면 : 실음생략.끝.

군산시 고시 제2010 - 69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80	8	국지도로	120	중로3-2	소로2-67	일반도로	-	군산고1048 (05.12.16)	
변경	중로	3	62	14	국지도로	120	중로3-2	소로2-67	일반도로	-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67	8	국지도로	393	문화동888-10 대로3-2	문화동782-1 중로2-4	일반도로	-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421	8~14	국지도로	393	문화동888-10 대로3-2	문화동782-1 중로2-4	일반도로	-		폭원확장

2.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서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7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11.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축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대야면	중로2-6	15	215	15	80	1,147	
서오산마을	소로3-13	6	205	6	71	786	
도로개설	소로2-6	9	275	9	275	3,356	
소 계			695		426	5,289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5. ~ 2013. 5.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사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도시계획 도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관리내용	
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30-4	대	164	42	채규빈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430			가압류
2	“	419-2	대	16	16	채규빈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430			
3	“	419-1	도	722	32	국	군산시			
4	“	413-7	대	174	174	국	군산시			
5	“	412-1	전	363	160	이관호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413			
6	“	413-8	대	359	359	국	군산시			
7	“	412-2	도	13	2	이철민	사정			
8	“	411-2	도	73	37	두영균	산월리 409			
9	“	410-2	도	7	6	두영균	산월리 409			
10	“	410-1	대	182	62	두영균	산월리 409			
11	“	409-4	대	695	239	국	군산시			
12	“	408-1	대	496	16	사회복지법인 우덕어린이집	산월리 408-1			
13	“	408-4	대	97	13	두진각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3-1204			
14	“	408-6	대	407	404	국	군산시			
15	“	408-5	대	233	21	서복하	산월리 409			
16	“	432-9	도	155	26	박수복	서울간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 4차아파트 208동 209호			
17	“	432-10	도	112	19	박수복	서울간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 4차아파트 208동 209호			
18	“	432-4	전	717	303	박수복	서울간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 4차아파트 208동 209호			
19	“	435-1	도	603	28	국	군산시			
소계				19	1,95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사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도시계획 도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2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35-3	답	1	1	두영균	산월리 409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21	“	435-5	대	263	90	장순자	산월리 434-5			
22	“	435-2	답	4,995	103	두영균	산월리 409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23	“	434-6	대	372	4	이충구	산월리 434-6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24	“	434-7	대	688	383	소남석	산월리 396-3	대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25	“	434-2	대	1045	71	소남석	산월리 396-3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26	“	985	도	3567	104	국	농수산부			
27	“	432-6	대	243	86	송옥남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9-1 내동빌라 비-205			
28	“	432-7	대	621	265	박수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1 반포 한신타워아파트 102동 205호			
29	“	432-3	대	2172	263	박수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1 반포 한신타워아파트 102동 205호			
30	“	433-1	답	1,157	259	박수복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1 반포 한신타워아파트 102동 205호			
31	“	433-2	도	116	48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8-7			
32	“	406-1	대	579	215	고영곤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380			
33	“	산238-1	임	6,446	814	전주이씨이조 참판석월당공 파종중	산월리 832			
34	“	396-1	대	324	131	전주이씨이조 참판석월당공 파종중	산월리 832			
35	“	396-5	도	33	3	이희옥	산월리 821			
36	“	396-4	도	13	13	이현풍외5	산월리 821			
37	“	395-3	도	46	31	최순열	산월리 397			
38	“	396	대	172	70	김효국	산월리 396			
소계				19	2,954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 장 물 소 재 지				편 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 소	성명	
1	군산	대야	산월	430-4	가옥	슬래브+스레트	3동	92.25㎡	산월리 430	채규빈	1line
					담장	60.콘크리트블록	가. 1개소	1) 63.21m			
2	“	“	“	413-8	비닐하우스		1동	22.36㎡	군산시	국	1line
3	“	“	“	410-1	건물	슬래브	1동	13.9㎡	산월리 410-1	두영균	1line
					담장	콘크리트	1개소	1.8m			
4	“	“	“	408-1	컨테이너		1동	28㎡	산월리 408-1	사회복지 법인우덕어린이집	1line
5	“	“	“	432-4	비닐하우스		1동	44.5㎡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1 반포 한신타워아파트 102동 207호	박수복	2line
6	“	“	“	434-5	건물	슬래브	1동	13.2㎡	산월리 434-5	장순자	3line
					담장	블럭	1개소	15m			
					수목		EA	9			
7	“	“	“	434-6	가옥	스레트	1동	3.8	산월리 434-6	이충구	
8	“	“	“	434-7	가옥	기와	4동	245.4㎡	산월리 396-3	소남석	3line
					담장	블럭	1개소	84.7m			
					수목		EA	58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편입지장물조서

연번	지 장 물 소 재 지				편 입 물건명		편입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					주 소	성명	
9	군산	대야	산월	432-6	함석	함석	1동	10.5m ²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9-1 내동빌러 비 205	송옥남	3line
					수목	61.	가. EA	1) 20			
10	“	“	“	406-1	가옥	스래트	2동	209.7m ²	산월리 406-1	고영곤	3line
					담장		1개소	27.9m			
11	"	"	"	396-1	가옥	함석 + 슬라브	1동	128.9m ²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11 진 안골마을주공아파트1104-401	김옥희	3line
					담장	블럭	1개소	4m			
					수목		EA	15			
12	“	“	“	396-1	가옥	슬라브	1동	29.7m ²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11 진 안골마을주공아파트1104-401	김옥희	3line
13	"	"	"	396-2	담장	블럭	1개소	14m	산월리 396-2	채영희	3line
14	“	“	“	395-2	담장	블럭	1개소	16.6m	산월리 395-2	강정애	3line
15	“	“	“	397-1	가옥	스래트+슬라브	2동	40m ²	산월리 467	서이환	3line
					담장	블럭	1개소	30.4m			
					수목		EA	31			
건물						16동	681.2m ²				
컨테이너						1동	28m ²				
비닐하우스						2동	66.8m ²				
담장						9개소	195.1m				
수목						EA	97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년 - 71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6. 11.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미룡동 656-2번지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실시계획(당초)		실시계획(변경)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656-2번지외 5필지	30,447	656-2번지외 5필지	30,447	세부시설 용도변경 (붙임참조)
소 계			30,447		30,447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나운동 롯데4차@ 303/1001호
 - 2) 사업시행자 성명 : 나라골프연습장 대표 한덕수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6. ~ 2011. 11.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단 위 :m²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사 업 부 지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시	동				사업면적	제외 면적	주 소	성 명	소유자
1	군산	미룡	612-13	채	2	2	-	나운동 155-6 롯데4차 APT 303동 901호	강 기 환	사
2	"	"	612-19	채	735	735	-	나운동 155-6 롯데4차 APT 303동 901호	강 기 환	사
3	"	"	612-24	채	404	404	-	나운동 155-6 롯데4차 APT 303동 901호	강 기 환	사
4	"	"	654-4	도로	141	129	12		국	
5	"	"	654-9	채	110	110	-	나운동 155-6 롯데4차 APT 303동 901호	강 기 환	사
6	"	"	656-2	채	29,067	29,067	-	나운동 155-6 롯데 APT 303동 1001호	한 덕 수	사
계			6필지		30,459	30,447	1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

○ 당 초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안전시설		비고
구분	면적(m ²)							
계	1,726.40	계	2,871.20	계	562.09	계	1,120.90	
골프연습장	1,726.40	주차장	2,132.00	관리사무소	68.03	그물보호망	1,120.90	
		휴게실	85.65	창고	147.09			
		매점	28.36	안내소	271.31			
		휴게음식점	169.16	조명시설	○			
		탈의실	356.90	급수시설	39.78			
		욕실	18.60	배수시설	○			
		화장실	80.53	방수시설	35.88			
				각종표지판	○			

○ 변 경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구분	면적(m ²)
계	1,726.40	계	2,702.04	계	562.09	계	1,120.90	계	163.39
골프연습장	1,726.40	주차장	2,132.00	관리사무소	68.03	그물보호망	1,120.90		
		휴게실	85.65	창고	147.09				
		매점	28.36	안내소	271.31				
		-	-	조명시설	○			일반음식점	163.39
		탈의실	356.90	급수시설	39.78				
		욕실	18.60	배수시설	○				
		화장실	80.53	방수시설	35.88				
				각종표지판	○				

-비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제2항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2010년 5월 26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편익시설(휴게음식점)을 기타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 가능.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98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6. 18.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387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2)명 칭 : 군산 시립묘지 주차장 조성공사
 - 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면적(㎡)	면적(㎡)	
주 차 장	65	21,826	21,826	
소 계		21,826	21,826	

-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공영사업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6. ~ 2013. 6.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